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태국

※본 자료는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현행 법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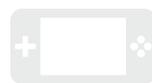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1. 결제수단	2
1-1. 대금 지급 방법	2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2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2
2. 표시광고	2
2-1. 표시광고(정보제공)	2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2
3. 청약철회	3
3-1. 청약철회	3
3-2. 환불	3
4. 환불	3
4-1. 표준약관 환불	3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4
5. 미성년자 결제	4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4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관련)	4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4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5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5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5
6-1. 전자문서 활용	5
6-2. 거래기록 보존	5
6-3. 조작 실수 방지	5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5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5
6-6. 청약 확인	6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6
6-8. 결제한도	6
6-9. 추천 광고	6

1. 등급심의	8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8
1-2. 등급분류 주체	8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8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8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8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8
2. 등급분류 사후관리	8
2-1. 등급분류의 거부	8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8
2-3. 등급분류 효력	8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9
2-5. 등급의 조정	9
2-6. 등급분류의 취소	9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9
3. 확률형 아이템	9
3-1. 판매 가능 여부	9
3-2. 적용 대상	9
3-3. 준수 사항	9
3-4. 미 준수 시 페널티	9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9
4. 광고 관련	10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10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2
1-1. 본인인증/ID 생성	12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12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12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12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12
1-6. 강제적 섯다운제	12
1-7. 섯택적 섯다운제	12
1-8. 미성년자 정의	12
1-9. 미성년자보호법	13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13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5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15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16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16
2. 개인정보 처리	16
2-1. 개인정보 파기	16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16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17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17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17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18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18
3. 개인정보보호	18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18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18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19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19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21
1-1. 게임법 유무	21
1-2. 게임 관련 규정	21
2. 경품 이벤트	21
2-1. 관련 법령	21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21
3-1. 국내 대리인 지정	21
3-2. 법인 설립 의무	21
3-3. 서버 설치 의무	21
4. 외국인 투자 제한	21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21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2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22
5. 서비스 허가증	22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22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지급 방법

- 관련 법률 : N/A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관련 법률 : N/A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 관련 법률 : N/A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관련 법률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 부연 설명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태국어로 제공해야 함(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제30조, 제31조)
 - 1) 결제 시간, 장소, 방법
 -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 장소 및 방법
 - 3) 해지 방법
 - 4) 반품 방법
 - 5) 상품 보증
 - 6) 결함상품의 대체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22조~제29조에 따라 광고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진술이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은 포함하지 않아야 함

아래의 진술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진술이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로 간주됨

- 1)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
- 2)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초래하는 진술.
이러한 진술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기술보고서 또는 통계 등을
사용하거나 언급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불문
- 3) 해당 국가의 법이나 도덕을 위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부추
기거나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경시를 조장할 수 있는 진술
- 4)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거나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진술
- 5) 장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에 규정된 기타 진술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 부연 설명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제33조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직접 마케팅으로 간주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2. 환불

- 관련 법률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 부연 설명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상 회사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관련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요건은 없음

동법 제33조에 따라 온라인게임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청약철회 할 수 있음

4. 환불

4-1. 표준약관 환불

- 관련 법률 : N/A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 관련 법률 : 민상법
- 부연 설명 : 소비자가 자신이 결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실수로 결제한 경우,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민상법 제406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간주되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음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 관련 법률 : 민상법
- 부연 설명 : 민상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 관련)

- 관련 법률 : 민상법
- 부연 설명 : 민상법 제21조에 따라 게임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미성년자를 위해 동의를 필요하고, 따라서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결제를 허용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해야 함

제24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수행한 모든 행위는 철회될 수 있음

나아가 민상법 제24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자신의 합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행위는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함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 관련 법률 : N/A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 관련 법률 : N/A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 관련 법률 : N/A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관련 법률 : 전자거래법
- 부연 설명 : 전자 문서, 결제 및 전자 거래에 적용되는 유일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자 거래의 관리를 규정하는 전자거래법으로, 제7조에서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법적 효과와 집행 가능성을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함

6-2. 거래기록 보존

- 관련 법률 : 전자거래법
- 부연 설명 : 전자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전자데이터는 최초 생성되었을 때부터 정보의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후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6-3. 조작 실수 방지

- 관련 법률 : N/A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 관련 법률 : N/A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 관련 법률 :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소비자보호법

- 부연 설명 : ‘2-1. 표시광고(정보제공)’ 부분 참고

6-6. 청약 확인

- 관련 법률 : N/A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 관련 법률 : N/A

6-8. 결제한도

- 관련 법률 : N/A

6-9. 추천 광고

- 관련 법률 : N/A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 관련 법률 : N/A

1-2. 등급분류 주체

- 관련 법률 : N/A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관련 법률 : N/A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관련 법률 : N/A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 자료

- 관련 법률 : N/A

1-6.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 관련 법률 : N/A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관련 법률 : N/A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등급분류 효력

- 관련 법률 : N/A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관련 법률 : N/A

2-5. 등급의 조정

- 관련 법률 : N/A

2-6. 등급분류의 취소

- 관련 법률 : N/A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 관련 법률 : N/A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 N/A

3-2. 적용 대상

- 관련 법률 : N/A

3-3. 준수 사항

- 관련 법률 : N/A

3-4. 미 준수 시 페널티

- 관련 법률 : N/A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 관련 법률 : N/A

4. 광고 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 관련 법률 : N/A

III.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관련 법률 : N/A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관련 법률 : N/A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 관련 법률 : N/A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관련 법률 : N/A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민상법

- 부연 설명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결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성인이 된 그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철회 동의를 얻은 그 미성년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제175조)

1-6. 강제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7. 섯택적 섯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8. 미성년자 정의

- 관련 법률 : 민상법

- 부연 설명 : ‘5-1. 미성년자의 기준’ 참고

1-9. 미성년자보호법

- 관련 법률 : N/A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 관련 법률 : N/A

IV.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법적 예외 사항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 1) 역사적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록 또는 연구 통계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고 위원회에 사전통지를 한 경우
- 2)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3) 정보주체가 일방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이나,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회사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공식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 5)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충돌하지 않는 한도에서, 회사와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회사가 따라야 하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아가,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성적 행동, 범죄기록, 건강 데이터, 장애여부, 유전자 및 생체정보 등의 수집은 제26조에 따른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음

동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는 제19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해 사전에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정보수집 동의요청은 다른 사항과 명확히 구별되는 방법으로 접근하기 쉽고 알기 쉬운 형태와 진술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야 함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면, 법 제24조와 제26조에 열거된 공익을 위한 기록이나 역사적 문서의 기록 등 열거된 법적 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

태국에 있지 않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정보주체에게 수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회사는 데이터 관리자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 정보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 데이터 처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정보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1) 개인정보가 수집, 사용 또는 공개된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또는 해당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23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전 또는 수집 시점에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정보주체에게 상세하게 알릴 의무가 있음
 - 1)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를 위한 수집 목적
 - 2) 법률이나 계약의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포함함
 - 3) 수집 대상 개인정보와 수집 기간. 단, 기간을 명확하게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기준에 따라 예상 가능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4) 개인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의 범주
 - 5) 개인정보 관리자, 연락처 및 연락 방법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보호대리인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DPO)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정보, 연락처, 연락 방법 등도 명시하여야 함
 - 6) 제1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7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관련 법률 : N/A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37조 제5항에 따라, 태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국 회사는 개인정보 관리자의 대리인을 서면으로 임명해야 함

대리인은 태국 내에 있어야 하며, 이 대리인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책임의 제한 없이 개인정보 관리자를 대신하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함

다만, 개인정보관리자가 태국 내에서 임명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음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28조에 따라 태국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회사는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수령국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함

제28조 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한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한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관련 법률 : N/A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철회권, 잊혀질 권리, 열람권, 정정권,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업데이트 또는 수정 권리, 처리활동 거부권, 민원 제출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정보주체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관련 법률 : N/A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부연 설명 :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함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관련 법률 : N/A

V.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관련 법률 : N/A

1-2. 게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 부연 설명 : 게임산업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이 있음. 한 게임이 다른 게임과 비슷하거나 다른 회사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관련 법률 : N/A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3-2. 법인 설립 의무

- 관련 법률 : N/A

3-3. 서버 설치 의무

- 관련 법률 : N/A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 관련 법률 : N/A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관련 법률 : N/A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관련 법률 : 외국인사업법
- 부연 설명 : 외국인사업법 상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외국인사업면허를 받아야 함

제17조에 따라 태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회사는 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DBD)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는 신청서에 기술한 대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 국장이 검토함

외국인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는 외국인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최소자본이 3,0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함

5. 서비스 허가증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관련 법률 : 전자거래법,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 부연 설명 : 전자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태국 상무국의 사업개발국(DBD)의 사전 통지, 등록 또는 면허가 필요함(전자거래법 제32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소비자 보호담당관에게 등록해야함(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 제27조, 제28조)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태국

KGAMES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7, 8F

Tel. 02.6203.1900 Fax. 02.3477.2708 E-mail. k-games@gamek.or.kr